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(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1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발 의 자 : 박기재, 권수정, 김기대,
김달호, 김상훈, 김제리,
노승재, 박기열, 송아량,
유 용, 이광호, 이영실,
이정인, 임종국, 최 선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의 경우 고령의 취약계층 및 감염병 환자, 노숙인 환자 치료 등 민간에서 꺼려하는 의료분야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입원간호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임.
-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환자의 안전관리 및 의료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-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대면회의 등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, 병원운영위원회 및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비대면 회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.(안 제5조의3 신설)

나.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 각종 위원회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24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의료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) 시장은 병원에서 간호·간병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원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24조(원격회의) 제7조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, 제12조에 따른 병원 운영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조의3(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) 시장은 병원에서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원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4조(원격회의) 제7조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, 제12조에 따른 병원운영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</u></p>

문서번호

2021012000000002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보건복지위원회

담당 : 조도형 과장
여차민 팀장
채소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1.01.20

회신일 : 2021.01.28

내용문의 : 02-2180-7942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3(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등)을 신설함에 따라,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서비스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,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알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
 - 같은 조례안 제24조(원격회의)의 신설은 비대면 회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